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6.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절차를 개선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현행에서는 의무기록은 피해자 인정 전에, 진료비 영수증 및 피해자의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피해자 인정 후 제출하였으나, 의무기록, 진료비 영수증, 기타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피해자 인정 전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일원화

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 피해신청자에 대해 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시점 규정(규칙 제6조의2)

의학적 판단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피해신청자에게 심사 기간이 180일을 경과한 사실을 통지하러 함

다. 긴급의료지원 신청 등(안 제11조)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긴급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적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긴급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통지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또는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사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정 등)”을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을 “영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 또는 요청을 하는”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종전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 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슴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종전의 제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2. 지급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요양급여

- 1) 진료비 및 약제비(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한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3) 의료기관에서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구제급여조정금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제2항 “인정”을 “신청”으로 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정”을 “신청”으로 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으로,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기간) 법 제10조의3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10조의3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제7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제목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다음 각 목의 서류 제8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사산”을 “유산·사산”으로, “등의 피해:”를 “외 가습기살균제에 건강피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 요약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를 “법 제32조제8호가목”으로,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를”을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인정: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긴급 의료지원”을 “의료적 긴급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긴급의료지원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32조제2항3호에 따른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7조”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로,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를 “법

제32조제8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 각 목”을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8호 가목”으로,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은 ““긴급의료지원 인정인””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급여 등 지급신청서에 급여의 지급 또는”을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지급신청서에”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분담금 부과”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로 한다.

환경부령 제80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중 “2019년 2월 15일”을 “2020년 9월 25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정보 제공 · 열람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이내
청구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 []사업자 []노출 확인자 단체	주소(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 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제공 방법	[]제공 []열람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청구 이 유					
용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제공, []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 ○ ○ 귀하

첨부 서류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노출확인자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0. 9. 25.>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피해자단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신청 사업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 내용						
사업 예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피해자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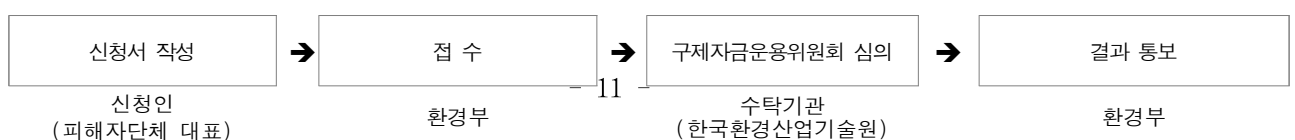
신청인(피해자단체 대표)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처 리 절 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9. 25.>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지급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시연락가능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지급신청자가 가족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시연락가능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신청자와의 관계
지급결정 여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구제급여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구제급여 신청내용	생 존 자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간병비 ([] 전문 간병인 [] 가족, 전문 간병인 외 간병인)
		[] 장애급여
	사 망 자	[] 장의비
		[] 미지급 요양급여등
		[] 구제급여조정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급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동의서

본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통지할 때 신청서에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첨부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공통	1. 예금통장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합니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의비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간병비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해급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요양급여등	1. 진료비 및 약제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합니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증명 발급번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건강피해 내용			
	인정 결정일			
	건강피해 피해등급			
	유효기간			

위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직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9. 2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진찰·검사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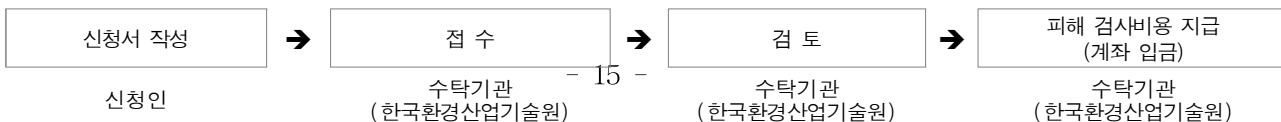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

처 리 절 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9. 25.>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건강피해 내용			
	건강피해 피해등급	[] 고도장해 [] 중등도장해 [] 경도장해 [] 등급 외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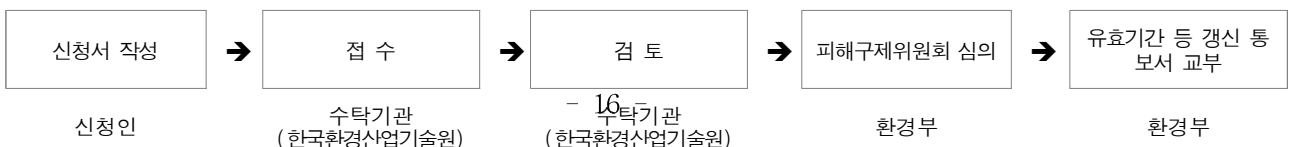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신청안내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피해 내용				
결정 내용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취소			
	☐ 유효기간 갱신			
	갱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피해등급 변경			
	☐ 고도장해 ☐ 중등도장해 ☐ 경도장해 ☐ 등급 외			
결정 이유				

끝.

환 경 부 장 관직인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		
구제급여 신청내용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서류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부 2.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사망진단서 3. 그 밖에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4. 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5.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9. 25.>

구제급여 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주소						
구제급여 결정내용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 요양급여 등					
		[] 지원금 내역 통보일 [] 입금일					
	지원금액						
조정신청 사유		(별도 기재 가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제급여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19 -

첨부 서류	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합니다) 1부
-------	--

재심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시연락가능번호)			
	주소						
	사망자 성명(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최초로 통지받은 결정	결정의 종류(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기입)					결정의 내용을 통지 받은 날	
	통지받은 결정 내용						
재심사 청구 사유		(별지 기재 가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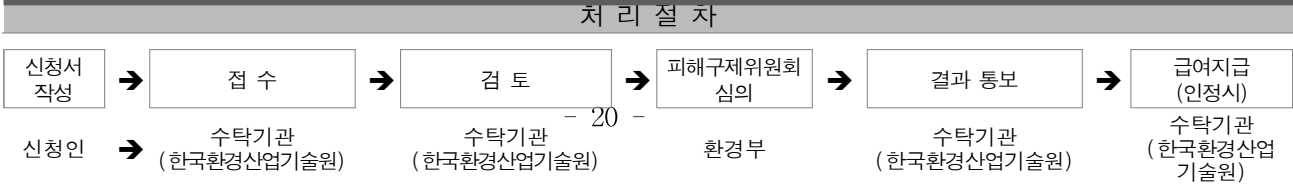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서류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안내

청구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25.>

긴급의료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시연락가능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피해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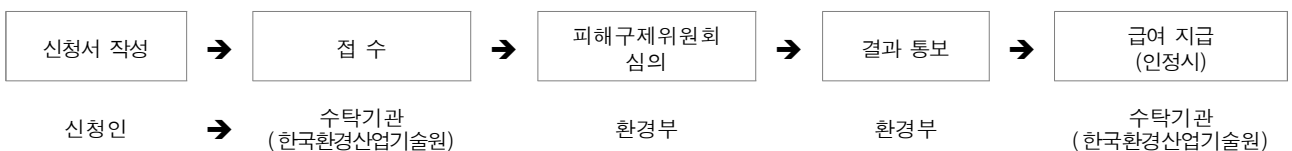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건강상의 피해로 인하여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3. 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	---

처리절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납부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분담금 명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합계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과징수기관의장직인

유의사항

1. 위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분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제공·열람 청구서(이하 “정보제공·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 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사본 또는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3. (생략)

② (생략)

제5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

1. -----

----- 사본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 또는 요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

-----.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라 한다)

나.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인

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
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과 그 검사 서류 및 폐기능
검사 서류

다. 그 밖에 가슴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

· 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
상 등의 피해: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

하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
퇴원 기록 요약지

나. 태아의 출생 관련 의무기
록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
록부

<삭 제>

나. -----

<삭 제>

라. 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3.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

2. 지급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1. 요양급여

가. 진료비 및 약제비(영 제1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한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다.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요양급여

1) (현행 가목과 같음)

2) (현행 나목과 같음)

3) -----

--[제1호 및 제2호의] -----

-----]

2. 장의비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간병비

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 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구제급여조정금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

나. 장의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

다. 간병비

1) (형행 가목과 같음)

2)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4호와 같음)

마. 구제급여조정금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

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
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슴
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
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
차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
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
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슴기살균
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
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
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
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
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위한 진찰·검사 등의 비
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
역서

2. 금융회사등에서 법 제10조제
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
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또는
인정신청자 명의로 개설한 예
금통장 사본

3.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
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한 자에게 지원 비용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
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
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

1. 구제급여 지급결정-----

--

2. -----
----- 구제급여 지급결정
을 받-----
지급신청자 -----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
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한 자에게 지원 비용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
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
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
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
3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야

1.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
원 기록 요약지

나. 다. (현행과 같음)

2. 유산 · 사산 -----

-- 외 가습기살균제에 건강피
해: -----

가. ~ 마. (현행과 같음)

<작 제>

<작 제>

정받으려는 사람에 관한 서류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

4.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
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
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
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가 있
는 경우: 해당 피해 내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 지
급신청서에 구제급여를 받을 사
람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
한 예금통장 사본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
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급여

가. 진료비 및 약제비(영 제19

<삭 제>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 또는
요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
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
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
강상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
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
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
함한다) 영수증 및 거래내
역서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다.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
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의비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
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
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
기록부”라 한다)

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
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삭 제>

2. 지급신청자 명의로 금융회
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
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서류.

가.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영 제
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을 포함한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나.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신 설>

3. 간병비

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구제급여조정금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
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
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구제급여조정금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
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
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신 설>

제11조(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
원) ① 법 제32조제2호 또는 제

<삭 제>

<삭 제>

②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
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
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
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
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
원) ① 법 제32조제8호 가목--

8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인정: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인정: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건강상의 피해로 인하여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

 ----- 긴급의
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야-. <단서 삭제>

1.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긴급의
료지원 신청자의 가습기살균
제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 의료
적 긴급성-----

3. 영 제32조제2항3호에 따른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
법 제7조----- 피해구
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구제계정 급여 등 지급신청서에 급여의 지급 또는 금액의 지원을 받을 사람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

회”-----

----- 법 제32조제8호 가목-----

-----해야-----.

③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8호가목-----

----- “긴급의료지원 인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지급신청서에 -----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삭제>

급여등에 상당하는 급여의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한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슴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따른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제급여조정금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

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
의 지원(같은 호 가목에 따른
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

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

당한다)

<신 설>

④ (생 략)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또는 같은 조 제8호 각 목
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하는 경
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 또는 금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은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
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

액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
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
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
원회로 통보된 자가 제1항에 따
른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
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
서 및 그 첨부서류를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한 것
으로 본다.

⑦ 영 제32조제3항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급여조정신청
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특
별구제계정 지원 급여조정신청
서를 말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
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야 한다. -----

----- 있다

<삭 제>

<삭 제>

제15조(이의신청) ① -----

----- 분담금 또는 추가분

담금 부과-----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80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80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u>2019년 2월 15일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u>2020년 9월 25일</u>-----.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u><삭 제></u>
제3조(특별유족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u><삭 제></u>
제4조(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u><삭 제></u>

후 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
계정을 통한 지원을 받기 위하
여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
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